

제2920호  
2022. 5. 4.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기 관 의 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22-33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제2022-34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 고 시

- 제2022-37호 :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26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3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1. 1. 12. 공포) 및 '22. 1. 13.자 시행으로 주민감사 청구 요건(주민감사 청구 연령  
및 청구 주민의 수)이 완화되어 관련 위임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위임 근거규정 변경[조례안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제21조로 변경
- 나.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령 변경[조례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03, FAX : 02-3396-9013, e-mail : manxiaolu@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조례 위임의 근거 조항“「지방자치법」제16조”를“「지방자치법」제21조”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중 조례 위임의 근거 조항“「지방자치법」제16조”를“「지방자치법」제21조”로 하고, 감사청구 연령을“19세 이상”에서“18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지방자치법」 제21조 ----- -----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 ----- -----18세 이상-----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34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개정
  - ‘결손처분’을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내부행정절차인 ‘정리보류’와 징수권 소멸로 인한 ‘시효완성정리’로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용어 변경 (§13)
- 결손처분 관련 서식 이름 변경 및 시효완성정리 관련 조문 신설 (§14)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 (§14~§16)
-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 전부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li> <li>□ 신고납부</li> <li>□ 감액</li> <li>□ 정리보류</li> <li>□ 시효완성정리</li> </ul> </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결정결의서</p>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탐상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 구 외 명 번길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뒤 쪽)

### 내역서

구분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팀장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구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계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분월분	분월분까지 누계	분월분	분월분까지 누계	분월분	분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분월분	분월분까지 누계
총합계															
현년도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비고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m<sup>2</sup>)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채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	·						
1. 채납사유				채납자 주소지 약도																
2. 조치																				
3. 처리현황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b>주거 확인</b>		<b>재산 확인</b>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작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b>생활상태 확인</b>		<b>재조사 확인</b>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앞 쪽)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뒤 쪽)

<b>정 리 보 류 표</b>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b>정 리 보 류 표</b>							
결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시 효 완 성 정 리 표								
결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무2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업종)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2. 법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b> ① (생 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 략)</p> <p><b>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b>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갑, 을)에 따른다.</p> <p>&lt; 신 설 &gt;</p> <p><b>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b>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을</u>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u>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b>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을 취소</u>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p>	<p><b>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b>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효완성정리</u>----- -----.</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14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b> ---- <u>정리보류결정결의서</u>-----<u>정리보류표</u>----- -----.</p> <p>② <u>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u> <u>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u> 및 <u>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u></p> <p><b>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b> ----- <u>정리 보류를</u> ----- -----<u>정리보류 취소액</u>----- -----.</p> <p><b>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b>----- ----- -----<u>정리보류를 취소</u>-----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37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8호(2022.3.3.)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마포로5 9-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1,591.6	-	1,591.6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관리청)
기정	-	사회복지시설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부지면적 : - (연면적 : 1,817.9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8호 ('22.03.03)	복합설치 (서울특별시청)
변경	-	사회복지시설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부지면적 : - (연면적 : 1,819.7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8호 ('22.03.03)	복합설치 (서울특별시청)

※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1,591.6	9-1	1,591.6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주거	60이하 (저층부 71이하)	1,030이하	7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136	100.0					
		공동주택	소 계		68	50.0				
			일반분양	84㎡	29	21.3				
			장기일반민간임대	59㎡	39	28.7				
		오피스텔	소 계		68	50.0				
	일반분양		52㎡	34	25.0					
			82㎡	17	12.5					
	84㎡	17	12.5							
	변경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136	100.0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소 계		102	75.0				
일반분양			59㎡	63	46.3					
장기일반민간임대			59㎡	39	28.7					
오피스텔		소 계		34	25.0					
	일반분양	52㎡	17	12.5						
		82㎡	17	12.5						
심의 완화 사항	용적률 완화	기정	• 상한용적률 완화량 : 258.80% ⇒ 250%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 × [ 1.3 × α ]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6.22㎡ / 1,591.60㎡ = 0.2552 = 780% × ( 1.3 × 0.2552 ) = 258.80%							
			변경	• 상한용적률 완화량 : 258.87% ⇒ 250%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 × [ 1.3 × α ]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6.33㎡ / 1,591.60㎡ = 0.2553 = 780% × ( 1.3 × 0.2553 ) = 258.87%						
	용적률 완화	기정		• 상한용적률 완화량 : 258.80% ⇒ 250%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 × [ 1.3 × α ]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6.22㎡ / 1,591.60㎡ = 0.2552 = 780% × ( 1.3 × 0.2552 ) = 258.80%						
			변경	• 상한용적률 완화량 : 258.87% ⇒ 250% 적용 산식 = 허용용적률 × [ 1.3 × α ]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6.33㎡ / 1,591.60㎡ = 0.2553 = 780% × ( 1.3 × 0.2553 ) = 258.87%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가.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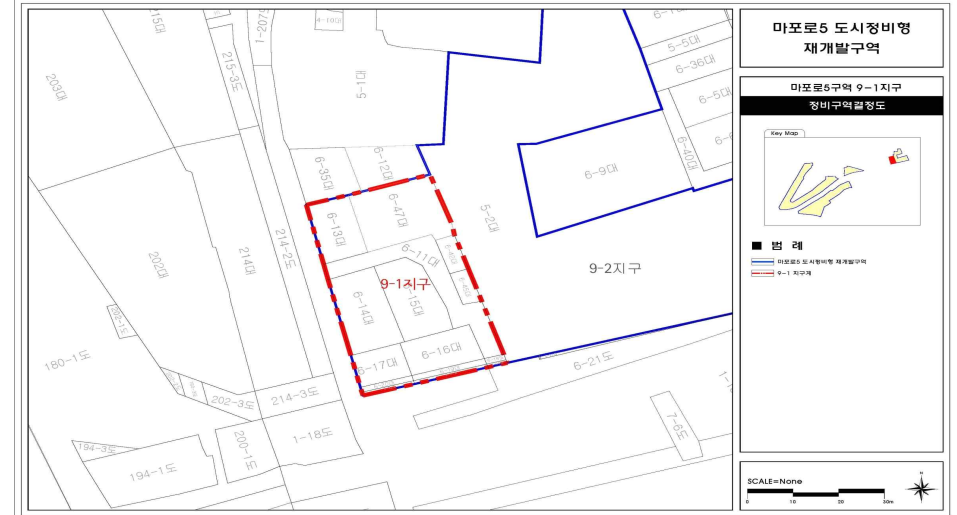
3.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7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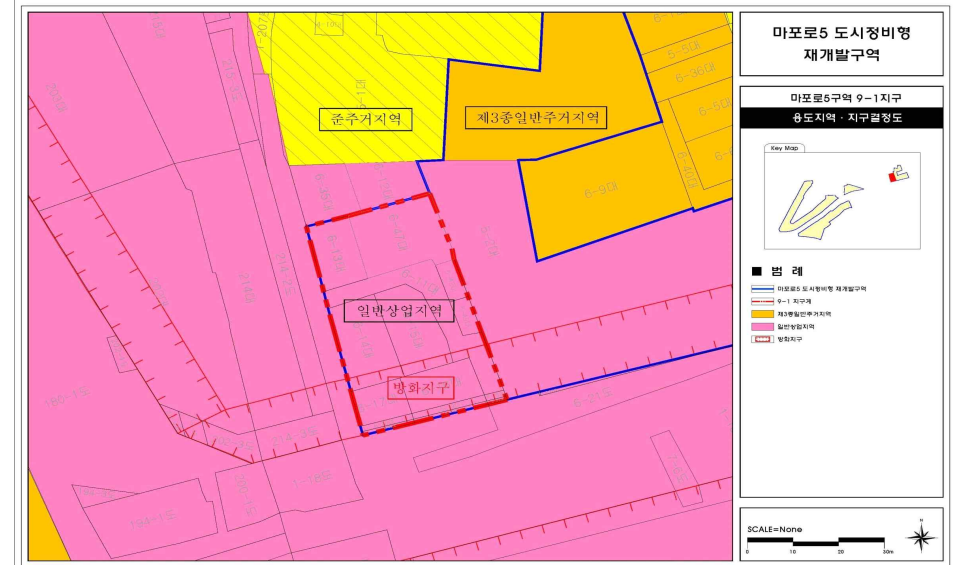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